

『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』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안 자 : 구 미 시 장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는 WHO 건강도시로서 인구 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와 사업장 산업재해 사전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업하기 좋은 도시, WHO 건강도시 구미를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제 기본사항(안 제1조 ~ 제2조)
-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 운영 사항(안 제3조 ~ 제7조)
-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기업 지원사항(안 제8조)
 - 인증심사에 사용되는 비용 중 신청 기업 등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
 - 「구미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」에 따라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 시 우대업체로 선정
- 인증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(안 제9조~제12조)
 - 위원회 구성
 - 운영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 10명 이내로 구성

- 위원장은 업무담당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(互選)
- 위원은 관련분야 공무원, 인증 관련 민간전문가, 인증에 관한 경험이 풍부한 민·관 관련기관 내 담당자
- 기타 건강한 일터 인증에 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
- 위원의 임기
 - 위원회의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,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함
- 위원의 해촉
-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·여비 및 필요경비 지급

4. 참고사항

- 「구미시 건강도시 기본조례」 제4조, 제5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구미시는 WHO 건강도시로 인구 구성 및 산업적 특성에 맞는 차별화된 맞춤형 브랜드 사업의 필요와 사업장 산업재해 사전 예방 및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위한 건강한 일터 인증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, 기업하기 좋은 도시, WHO 건강도시 구미를 구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임

○ 주요 내용은

- 안 제1조 및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,
- 안 제3조에서 제7조는 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에 따른 신청 대상과 인증제 신청 및 절차, 그리고 건강한 일터 인증에 관한 사항과 건강한 일터 조성을 촉진하고 기업 등의 참여를 확산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- 안 제8조에서는 건강한 일터 인증을 받은 기업 등에 대하여 시장이 지원할 수 있는 사항을 정하였으며
- 안 9조에서 11조까지는 인증제 추진을 위한 인증심사를 위하여 “구미시 건강한 일터 인증운영위원회”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음

○ 검토결과

- 본 조례안은 젊은 도시, IT첨단산업 도시인 구미의 이미지에 걸 맞는 건강한 기업 육성을 위하고, 산업재해 사전예방과 근로자의 건강증진을 도모할 뿐 아니라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라 판단되며,

건강한 일터 나비(Navi) 인증을 활성화시킨다면 구미시 2,675개의 제조업 사업장에 근무하는 근로자 8만4천여명이 안전하고 건강한 작업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됨